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

제출년월일 : 2003. 11.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2003. 7.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총무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사건립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변경

2. 주요골자

사하구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을 총무업무 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을 변경함
(안 제7조제1항제2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중 "총무업무 담당주사"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생략) 1. (생략) 2. 기금출납원 : 총무업무 담당주사 ② (생략)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